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몰없이 직급상향한 정원 3명(6급 3명의 정원을 5급 3명으로 상향)에 대해 3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유통정책관에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3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보 “4”를 “5”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서기보 “5”를 “6”으로, 운전서기보 “2”를 “1”로 한다.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2년 3월 15일”을 “2024년 3월 15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2의2에 따른 행정사무관의 정원 중 2명과 별표3의2에 따른 행정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5년 00월 0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00월 0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3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 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가맹거래조사팀은 <u>2022년 3월 15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4년 3월 15일</u>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4</u>	<u>5</u>	+1
운전서기보	<u>2</u>	<u>1</u>	-1
·	·	·	

[별표 3의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5</u>		<u>6</u>	+1	
운전서기보			<u>2</u>		<u>1</u>	-1	
	.		.		.		